
방송통신기자재등 세관 통관관련 적합성평가제도 설명회

2021. 10. 21. (목)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행정사 박래현

목 차

I. 적합성평가 제도	3
1. 적합성평가의 개요	3
2. 관련 규정	3
3.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4
II. 유형별 대상 기자재 및 평가절차	4
1. 적합성평가 유형	4
2. 분야별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5
3. 적합인증·등록 및 잠정인증 절차	5
III. 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13
IV. 적합성평가의 변경	14
V. 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등	16
1. 적합성평가 면제	16
2. 적합성평가 확인	19
3. 사전통관 신청	19
VI.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사후관리	20
1. 사후관리	20
2. 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20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1
4. 적합성평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22
VII. 벌칙	23
부록	24
1. 적합성평가 제도 FAQ	25
2. 적합성평가 대상 및 비대상 기자재 예시	38

I. 적합성평가 제도

1. 적합성평가의 개요

□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

적합성평가 유형

- **적합인증** : 해당 기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유효성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 등을 직접 심사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적합한 경우에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인명안전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 정도가 높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함
- **적합등록** :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신청자가 해당 제품의 적합성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인명안전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 정도가 다소 낮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함
- **잠정인증** :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나 기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관련 기술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인증을 허용하는 제도로 잠정인증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함

2. 관련 규정

구 분	전 파법	전 파법시행령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적합인증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적합인증)	제5조(적합인증의 신청 등) ~ 제7조(적합인증서의 교부)
적합등록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3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3(적합등록)	제8조(적합등록의 신청 등) ~ 제10조(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
잠정인증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7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6(잠정인증)	제11조(잠정인증의 신청) ~ 제14조(잠정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3.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구 분	적합성평가 기준
공통기준	○ 전파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EMC) 기준
개별기준	○ (무선, 방송 분야) 법 제37조, 제45조, 제47조의2 또는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 (유선 분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 (전자파흡수율 분야)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 (기타)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II. 유형별 대상기자재 및 평가절차

1. 적합성평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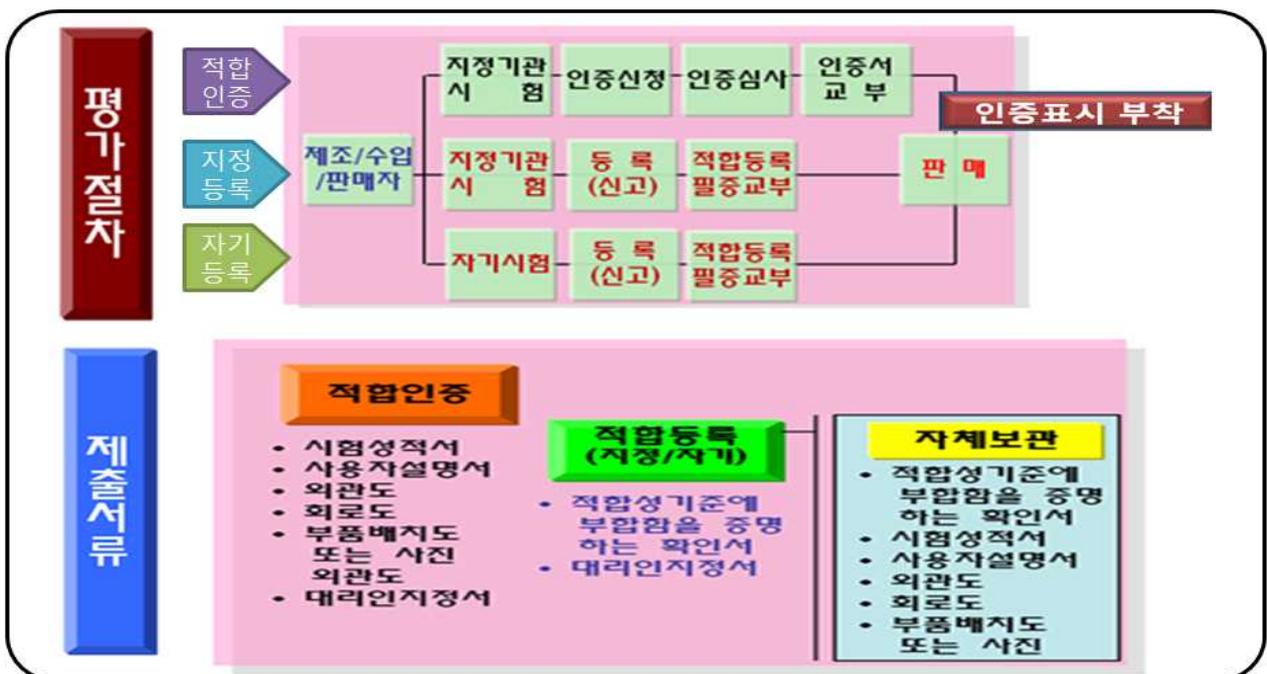
- 위해정도(전파 혼간섭, 망 위해 및 인명안전)를 고려한 인증유형 분류

인증구분	분 류 기 준
적합인증	○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가 대상 (예시 :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
적합등록	○ (지정시험기관)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등록 (예시 : USN용 무선기기, 교환시스템,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등) ○ (자기시험)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 (예시 : 공중전화기, 가입자보호기, 휴대용 자동차 진단기 등)
잠정인증	○ 평가기준이 없는 신제품이 전파환경에 위해가 없거나,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인증

2. 분야별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순번	분야별 기자재 분류	적합성평가 유형(종)			
		적합인증	지정등록	자기등록	계
1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38	0	0	38
2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1	0	0	1
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 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21	0	0	21
4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기	43	0	0	43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했을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9	24	0	43
6	기타 무선설비의 기기	3	0	0	3
7	단말장치 기기(방송통신설비의 기기)	0	31	7	38
8	유선방송국 설비의 기기	1	5	0	6
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의 기기	1	0	0	1
10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기기	0	6	8	14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0	128	39	167
합 계		127	194	54	375

3. 적합인증·등록 및 잠정인증 절차



< 평가 절차도 >

가. 적합인증

□ 관련 법령

- 법 제58조의2 제2항, 영 제 77조의2, 고시 제5조~제7조

□ 대상기자재 분류기준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에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 구비서류

- 사용자설명서(한글본), 시험성적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대리인지정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함)

□ 적합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
- 적합성평가 최초 신청 시 개인, 법인의 식별부호 신청 : 별지 제2호서식
 - ☞ 기구적·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부품의 선택적 사용 목록 및 동일성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변경신고 생략 가능
 - ☞ 적합인증 신청과 동시에 파생모델 등록 가능
 - ☞ 회로도 미제출 할 수 있는 경우 : 병행수입자, 수입자가 회로도 확보·제출이 어렵다고 인정(준수사항 : 매2년마다 시험성적서 제출)

□ 적합인증 심사·교부 및 관보 공고

- 신청·첨부서류의 적절성과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의 적절성, 시험 성적서의 유효성 등 심사
- 시험성적서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확인 필요시 해당기자재의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유효성 확인가능
-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 적합인증서를 교부하고 관보 공고

□ 처리기간 : 5일 이내

나. 적합등록

□ 관련 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 및 제4항, 영 제77조의3, 고시 제8조~제10조

□ 대상기자재 분류기준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기자재와 자기시험등록 대상이 아닌 기자재
-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 측정·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 등

□ 구비 서류

- ①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②대리인지정서 (대리인 지정한 경우)

□ 적합등록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①사용자설명서(영문가능), ②시험성적서, ③외관도, ④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⑤대리인지정서, ⑥적합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⑦기타 변경신청 서류 등, ⑧회로도(EMC 기준 적용 기자재만 생략 가능)
 -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생략 가능
 - 적합등록 기자재 중 단말기기류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 되는 부분의 회로도 비치

□ 적합인증과 적합등록 복합기자재의 처리방법

- 적합인증과 적합등록이 복합된 기자재는 기본적으로 적합인증 절차 준용
-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내장 또는 장착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적합등록 절차 준용 가능

□ 구성품 확인제도

- 적합등록을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 받아 별도의 시험없이 적합등록 신청 가능
- 관련서식 : 별지 제15호서식(적합등록 기자재의 구성품 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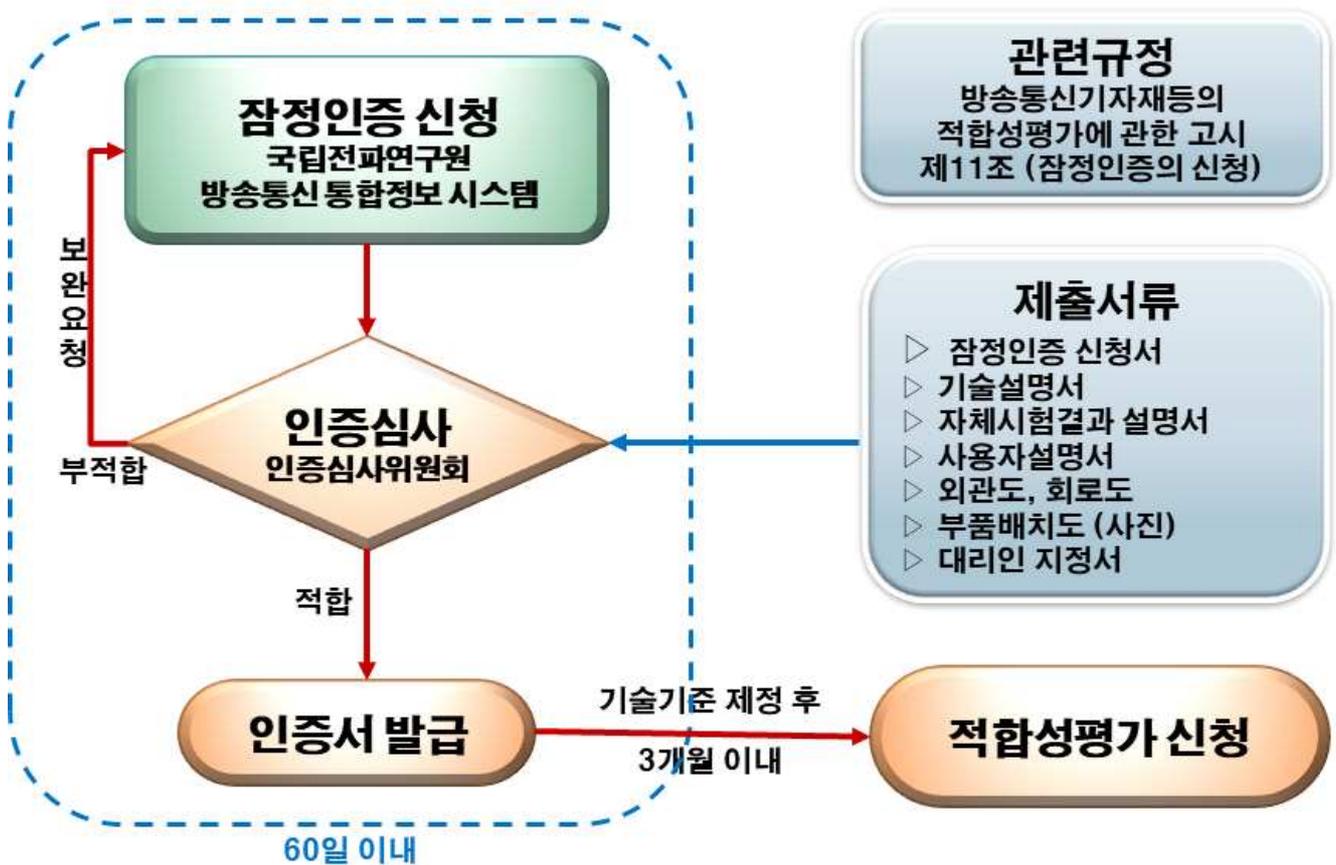
□ 적합등록필증 교부 및 관보공고

- 적합등록 신청 시 적합등록필증을 교부하고 관보에 공고

□ 처리기간 : 즉시 처리

다. 잠정인증

□ 잠정인증 절차 및 제출서류



□ 관련 법령

- 법 제58조의2 제7항, 영 제77조의6, 고시 제11조~제14조

□ 잠정인증 신청 조건

-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경우
 - 국 내·외 표준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인증을 허용하고, 향후 기술 기준이 제정된 후 정식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
 - ☞ 적합성평가기준 제정 인지 후 90일이 되는 날까지 시험을 거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

□ 잠정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
 - 첨부서류 : ①기술설명서(한글본), ②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③사용자 설명서, ④외관도, ⑤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⑥회로도, ⑦대리인 지정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함)

□ 잠정인증 심사·교부 및 관보공고

-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제품심사 실시
 - 서류심사 : 서류의 적정성, 잠정인증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주파수분배의 적정성 여부, 사용지역과 신청자의 신청 유효기간의 적정성 여부 등
 - 제품심사 : 국제표준기구(ITU, ISO/IEC 등)의 표준, 한국방송통신 표준 및 한국산업표준, 방송통신 관련 표준, 기타 해당 제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 국제적으로 신기술인 경우 신청자가 제안하는 기준 등
- 심사결과 잠정인증을 허용한 때에는 잠정인증서를 교부하고 관보에 공고

□ 처리기간 : 60일(필요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 서 식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0. 20.>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 <i>Certificat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i>	
상호 또는 성명 <i>Trade Name or Applicant</i>	
기자재명칭 <i>Equipment Name</i>	
기본모델명 <i>Basic Model Number</i>	
기기부호/추가 기기부호 <i>Equipment code/Additional Equipment code</i>	
파생모델명 <i>Series Model Number</i>	
인증번호 <i>Certification No.</i>	
제조사/제조국가 <i>Manufacturer/Country of Origin</i>	
인증연월일 <i>Date of Certification</i>	
기타 <i>Others</i>	
<p>위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certificated under the Clause 2,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p> <p style="text-align: right;">년(Year) 월(Month) 일(Day)</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i>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i></p> <p style="color: red;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top: 10px;"> ※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 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p>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i>Regist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i>	
상호 또는 성명 <i>Trade Name or Registrant</i>	
기자재명칭(제품명칭) <i>Equipment Name</i>	
기기부호/추가 기기부호 <i>Equipment code/Additional Equipment code</i>	
기본모델명 <i>Basic Model Number</i>	
파생모델명 <i>Series Model Number</i>	
등록번호 <i>Registration No.</i>	
제조사/제조국가 <i>Manufacturer/Country of Origin</i>	
등록연월일 <i>Date of Registration</i>	
기타 <i>Others</i>	
<p>위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registered under the Clause 3,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p> <p style="text-align: right;">년(Year) 월(Month) 일(Day)</p> <p style="text-align: center;">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p> <p style="text-align: center;"><i>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i></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 적합등록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 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p>	

210mm×297mm[백상지(120g/㎡)]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서 <i>Interim Certificat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i>	
상호 또는 성명 <i>Trade Name or Applicant</i>	
기자재명칭 <i>Equipment Name</i>	
기기부호/추가 기기부호 <i>Equipment code/Additional Equipment code</i>	
기본모델명 <i>Basic Model Number</i>	
파생모델명 <i>Series Model Number</i>	
잠정인증번호 <i>Interim Certification No.</i>	
제조사/제조국가 <i>Manufacturer/Country of Origin</i>	
인증연월일 <i>Date of Certification</i>	
유효기간 <i>Validity</i>	
허용조건 <i>Permission Conditions</i>	
<p>위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interim certificated under the Clause 7,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p> <p style="text-align: right;">년(Year) 월(Month) 일(Day)</p> <p style="text-align: center;">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p> <p style="text-align: center;"><i>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i></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 ※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 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p>	

210mm×297mm[백상지(120g/㎡)]

Ⅲ. 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 관련 법령

- 법 제58조의2 제6항, 영 제77조의5, 고시 제23조

□ 표시 방법

- 제품 및 포장에 눈에 잘 띄도록 견고히 부착
- 또는 펌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표시 (e-labelling) 방법을 사용



적합성평가표시 = ① 국가통합인증마크 + ② 식별부호
+ ③ 적합성평가정보

□ 표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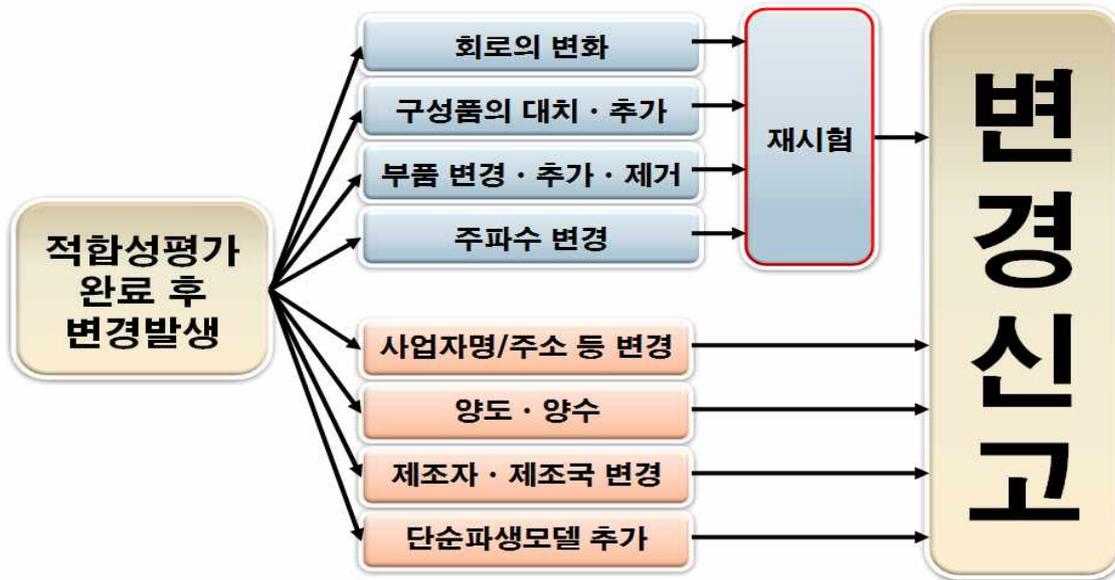
-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출고 전
- 수입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통관 전

IV. 적합성평가의 변경

□ 관련 법령

- 법 제58조의2 제5항, 영 제77조의4, 고시 제15조~제17조

□ 변경의 유형



□ 제출서류

-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와 변경사실 증명서류 제출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성적서, 외관도, 회로도, 부품 배치도, 변경 전·후 사진 ○ 적합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모델명 변경, 제조자, 제조국가 변경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신고서와 인증서(필증) 제출 ○ 상호, 성명,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원 등 증명서류와 인증서(필증) 제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원)의 제출 생략

□ 변경사항의 범위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의 경우 ○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의 내부에 장착된 구성품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 구성품의 제거는 변경사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적합성평가 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TV 등과 같이 일반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 정보기기는 제외 ○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의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모델명을 변경하는 경우 ○ 제조자 또는 제조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 상호, 성명,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 또는 법인(법인내 사업부서 포함)을 양도, 합병, 분할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으로 전환하는 경우 - 기타 상호명, 성명, 주소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드웨어 변경없이 S/W를 이용하여 사용중인 기능차단 또는 삭제의 경우 ○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하는 경우(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음) ○ 다이오드를 대치하는 경우 ○ 전기적회로 동일, 전력용량(Wattage) 축소 경우 ○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한 경우 ○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적합성평가 받은 동등한 기능의 다른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으로 대치 ○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제거

□ 변경신고의 생략

- 적합성평가 신청시 기구적·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부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부품 목록과 전기적 특성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전기적인 회로는 동일하고 단순 저장용량만이 변경된 기자재

V. 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등

1. 적합성평가 면제

□ 개요

-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중 시험·연구용,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 등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 관련 규정

- 전파법 제58조의3,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 ~ 제20조

□ 면제 대상의 범위

- 전부면제(적합인증, 적합등록 면제)
 -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 잠정인증을 받을 당시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 기준이 모두 같은 경우
 - 타 법령에 의거 EMC 분야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적합등록 면제)
 - ※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자동차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 일부면제(시험의 일부면제)

- 잠정인증을 받을 당시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경우

□ 유형별 면제 수량

순번	면제사유	수량(대)
1	품질 성능 검사 등 목적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1항 [별표 6의2] 1호 가목]	10
2	연구 및 기술개발 등 목적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1항 [별표 6의2] 1호 나목]	1,500
3	홍보 및 전시회 등 목적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1항 [별표 6의2] 1호 다목]	지정수량
4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 목적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1항 [별표 6의2] 1호 라목]	지정수량
5	국내 시장조사 목적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1항 [별표 6의2] 1호 마목]	3
6	외국 기술자에 의한 일정기간 내 반출 조건 목적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1항 [별표 6의2] 1호 바목]	지정수량
7	적합성평가 받은 기자재 유지보수 목적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1항 [별표 6의2] 1호 사목]	지정수량
8	군용 사용 목적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1항 [별표 6의2] 1호 아목]	지정수량
9	개인이 사용 목적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1항 [별표 6의2] 1호 자목]	1
10	국내 제조하여 외국 전량 수출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1항 [별표 6의2] 2호 가목]	지정수량
11	외국 재수출 및 납품 목적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1항 [별표 6의2] 2호 나목]	지정수량
12	외국 수출 제품 수리·보수를 위해 반출 조건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1항 [별표 6의2] 2호 다목]	지정수량
13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1항 [별표 6의2] 2호 라목]	지정수량
14	외국 납품 목적으로 주문 제작하는 선박에 설치 등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 1호]	지정수량
15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 2호]	지정수량
16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 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 3호]	지정수량

□ 신청절차 및 이행신고 안내

○ 신청 절차

- 관세청 UNI-PASS(<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
 - ☞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필요
 - ☞ 회원가입문의 :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서) 선택 후 아래 구비서류 첨부

○ 구비 서류

-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관세청 UNI-PASS 신청페이지에서 직접입력
-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사유서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 ※ 면제 항목별 사유서 양식 다운(작성용 한글파일), (출력용 PDF파일)

○ 적합성평가 면제 처리기간 : 1일 이내

○ 이행신고(사후관리) 안내

- 적합성평가 면제물품을 수입한 자는 요건면제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행신고서와 함께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제출
 - ※ (예)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 증명서류, 해당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용도폐기 확인서류 등
 - ※ 근거법령 : 통합공고[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 2021-165호, 2021.10.8] 제21조(요건면제 조건의 이행신고)
- 제출방법 : 이메일(rra2014@korea.kr)

2. 적합성평가 확인

□ 개요

- 수입 기자재의 통관을 위해 수입자가 관세청의 수입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해 주는 업무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26조제2항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8조

□ 확인 대상의 범위

-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등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수입 통관시 확인이 필요한 모든 물품

□ 신청 절차

- 관세청 UNI-PASS(<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
 - ※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필요
 - ※ 회원가입 문의 :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 통관 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 작성 →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확인 신청서) 선택 후 작성

3. 사전통관 신청

-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해 시험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확인 '신청 절차'에 따라 사전통관 신청을 하되 '사전통관 신청서'를 작성 제출

VI.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사후관리

1. 사후관리

□ 관련 법령

- 법 제71조의2, 영 제117조의3, 고시 제21 ~ 22조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적합성평가표시 여부, 적합성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유통·판매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 및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 사후관리 절차 >

절 차	유상/무상 수거	적부 판정	행정 처분
주요 내용	○ 사후관리 대상기기 선정 및 수거	○ 사후관리 시험	○ 결과통보 및 기기 반환
	○ 사후관리 조사거부, 방해 기피 시 과태료	○ 기술기준 및 인증 표시 등 적합여부 확인	○ 부적합 시 - 1차 : 시정명령 등 - 2차 : 생산, 수입, 판매중지 명령 - 3차 : 인증취소

2. 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 관련 법령

- 법 제58조의4, 영 제77조의8

□ 행정처분

- 개선명령(적합성평가의 취소,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 수입, 판매, 사용 중지)
 -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적합등록자가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적합성평가의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적합성평가의 취소를 받은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음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영 제118조제2호 관련, 별표23)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58 조의4제 1항제1호	시정명령 및 생산·수입· 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1개월)	생산·수입· 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2개월)	취소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8 조의4제 1항제2호	시정명령	생산·수입· 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1개월)	생산·수입· 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2개월)
적합성평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58 조의4제 1항제2호	취소	-	-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가목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 조의4제 1항제3호	시정명령	생산·수입· 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2개월)	취소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 조의4제 1항제4호	시정명령	생산·수입· 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2개월)	생산·수입· 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4개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	법 제58 조의4제 2항제1호	취소	-	-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 조의4제 2항제2호	취소	-	-

4. 적합성평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124조 관련, 별표28)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후 관련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5호의2	100	200	300
법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 제4호	50	70	100
법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대여한 자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	법 제90조 제5호의3	100	200	300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 제5호	50	70	100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90조 제5호의4	100	200	300
법 제58조의6제1항 및 제71조의2제2항(법 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90조 제5호의5	100	200	300

VII. 벌칙

□ 전파법 제84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 전파법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개조·변조한 자

□ 전파법 제86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파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전파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전파법 제58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복제 또는 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1. 적합성평가 제도 FAQ
2. 적합성평가 대상 및 비대상 기자재 예시

본 부록은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적합성평가 부적합 신청 사례집, 2020.10.』에서 발췌한 것임

1. 적합성평가 절차 및 일반사항 질의

Q A 1. 적합인증과 적합등록은 무엇이 다른니까?

“적합인증”은 무선 전파를 사용하여 통신을 하는 기능(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을 갖거나 통신망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자재들을 대상으로 하며, “적합등록”은 주변 기기와 전자파적인 위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자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적합등록은 기자재 종류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과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분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A 2. 대표적인 적합인증/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1)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
 - ①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스마트폰 등),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
- (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 ① 모터를 내장한 제품 :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전동공구 등
 - ② 가전기기 : 냉장고, TV, 앰프, 선풍기, 조명기기, 청소기 등
 - ③ 정보기기 : 노트북, 데스크탑 PC, 컴퓨터용 보드류, 주변기기류, 디지털 카메라 등
- (3)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 ① 산업·과학용 기자재 : 산업용컴퓨터, 과학용 냉동기기, 전자현미경 등
 - ② USB 또는 배터리 전원으로 작동하는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 (휴대용 선풍기, USB 가습기, 배터리방식 마사지기 등)
 - ③ 조광기, 전기작동 도어록, 전기모기채, 글루건, 전기어항, 누전차단기 등

Q A 3.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에서 지정시험기관을 선정하여 시험을 받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으로 적합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행정절차 등의 지침 또한 동 고시의 제5조~제7조(적합인증), 제8조~제10조(적합등록), 제11조 ~ 제14조(잠정인증)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A 4. 지정시험기관은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에서 “지정시험기관”을 클릭하면 지정시험기관의 목록, 주소, 지정분야,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여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자재가 어떤 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파악한 후, 해당 분야가 지정되어 있는 시험기관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Q A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자료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 ①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전파자료실-법령자료실-고시-공고 자료-인증 및 지정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행정규칙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로 검색하시면 원하는 부분만 발췌할 수 있습니다.



6. 적합성평가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적합성평가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거친 후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행정 절차는 적합인증의 경우 수수료 165,000원, 면허세 최대 40,500원, 처리 기간은 최대 5일이며, 적합등록의 경우 수수료 55,000원, 면허세 최대 40,500원, 처리기간은 즉시처리입니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시험기관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 면허세는 지자체 사무소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납부하실 수 있으며, 신고하기-등록면허세(면허분)에서 "3종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납부하면 됩니다.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적합등록필증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적합성평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별도로 적합성평가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8. 적합성평가를 완료한 후 KC인증마크는 어떻게 표시해야 합니까?

KC마크 도안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에서 전파업무→적합성평가제도→적합성평가제도 개요→적합성평가표시 도안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KC마크 인증마크와 함께 기록해야 할 정보는 상호, 기자재 명칭, 모델명, 제조년월, 제조자 및 제조국가, 적합성평가 인증(또는 등록)번호입니다. 표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3조(적합성평가의 표시 등)와 별표 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적합성평가를 완료한 기자재의 기자재 명칭, 기본모델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기자재 명칭 및 기본모델명의 변경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변경사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변경이 불가능하며, 해지 신청한 후 다시 적합성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10. 적합인증서/적합등록필증을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적합인증서/적합등록필증 상의 "상호 또는 성명"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의 적합성평가민원에서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재발급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민원신청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적합인증서/적합등록필증을 타 업체로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합성평가 변경신고로 인증서/등록필증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양수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양도인의 이사회 회의록 등), 적합인증서/적합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Q A 1.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 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②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 ③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 ④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 ⑤ 카메라 렌즈
- ⑥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 ⑦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액세서리
- ⑧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⑨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 ⑩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 ⑪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 학교 등 교육 기관에서 과학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 ⑫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중 정격전압이 10kW를 초과하는 기자재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1-10호) [별표 1]의 제11호 비고

Q A 2.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제품은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블루투스(Bluetooth) 기능이 있는 제품은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 시스템용 무선기기)로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이며, SAR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1-10호) [별표1]의 제5호



3.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에서 사용되는 CF, SD카드는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디지털기기의 메모리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CF, SD카드는 내부에 능동회로 또는 디지털장치 조건 등에 만족하지 않아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디지털장치는 9kHz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디지털신호로 동작되는 기자재로서 고시 제6호의 정보기기 이외의 기자재입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1-10호) 제2조



4. 다른 회사에서 적합성평가 받은 기자재를 저희 회사가 수입 (동일기기)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았고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품의 동일성 검증, 사후관리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수입자 및 판매자마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전파법 제58조의2



5. 아이폰 라이트닝 케이블도 적합등록 대상입니까?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액세서리는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이폰 라이트닝 케이블은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1-10호) [별표1] 제11호 비고

Q A 6. 시거잭을 사용하는 기기는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시거잭을 사용하는 기기는 대부분 9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를 내장하고 있어 적합성평가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 중에서 9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1-10호) 제2조제1항제7호

Q A 7. 건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단순 모터제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데 왜 「전파법」의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전파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공통된 목적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는 전파 혼·간섭 방지 및 기기 간 전자파 영향에 따른 기기 오작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은 기기의 화재·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두 법의 동일한 적용이 어렵습니다. 보다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해당 기자재는 전기안전측면에서 위해가 적다고 판단되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전파법」에서는 해당 기자재가 모터를 사용함에 따라 전자파로 인한 주변기기 오동작, 무선기기와의 혼·간섭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조, 전파법 제58조의2

【대상 기자재 예시】 USB/건전지(충전지 포함) 작동 선풍기, 면도기, 맛사지기, 보플 제거기, 이발기 등

Q A 8. 가상화폐 채굴용 컴퓨터는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채굴용 컴퓨터는 지정시험 기관 적합등록 대상입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1-10호) [별표1] 제11호

Q A 9. 전원공급장치는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이며, 기자재 외부에 케이블로 연결하여 사용되는 직류전원장치(어댑터, 컨버터) 또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입니다.

다만, 컴퓨터가 아닌 특수설비에 내장되는 구성품 또는 부품으로 사용하는 전원공급장치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1-10호) [별표1] 제11호

Q A 10. 전구, LED모듈은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전원공급장치, 안정기 등의 전자회로가 포함되지 않은 전구 및 LED모듈은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1-10호) 제11호

Q A 11. 스피커는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앰프를 내장하지 않은 스피커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스피커들은 적합성평가 대상입니다.

- ① 앰프 내장형 스피커
- ② 컴퓨터와 USB 케이블로 연결되는 스피커
- ③ 블루투스 스피커
- ④ 진동 기능을 가진 (게임용) 스피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1-10호) [별표1] 제11호



1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중 SAR 기준 적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정 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가능한지요?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중 전자파흡수율 대상이 아닌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적합 등록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업체에서 굳이 적합인증으로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안내가 필요.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1-10호) [별표1] 제5호



13.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에 따라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 등록으로 신청 가능한 대상 기자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무선기기류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자재가 있습니다.

- 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RFID용 무선기기(433M, 13.56MHz)
 - USN용 무선기기, UWB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 용도 미지정 무선기기, 물체감시센서용 무선기기
 - TVWS 데이터 통신용 무선기기,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 ※ 기타 단말장치류는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1의 제7호를 참조 바랍니다.

3. 수입통관 관련

Q A 1. 시험, 연구 및 시장조사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신청이 가능합니까?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에 따라 시험, 연구 및 시장조사 목적의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제1호 나목 및 마목

Q A 2. 수입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통관단일창구-요건신청-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유서, 수입 인보이스(화물송장)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공통 제출 서류】 수입 인보이스(송장) 및 사유서(사용 후 처리방법 명기 필수)

【수입 사유별 추가 제출 서류】

- ㉠ 시험·연구 목적 : 시험연구계획서(자유양식)
- ㉡ 국제회의, 대회, 전시회 참가 목적 : 회의, 대회, 전시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참가 요청서 등의 서류
- ㉢ 군용으로 사용되기 위한 기자재 : 군용으로 사용되기 위함을 증빙할 수 있는 군 대상 납품 계약서 등의 서류
- ㉣ 해외에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자재 : 해외로 수출됨을 증빙할 수 있는 수출 계약서, 주문서 등의 서류
- ㉤ 적합성평가를 받은 완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해 수입하는 구성품 또는 부품 : 완제품의 적합인증서/적합등록필증, 시험성적서



3. 방송통신기자재 수입 시 법인 1대, 개인 1대 반입하는 경우 적합성 평가 면제가 가능합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반입 1대의 경우 면제 및 신고절차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1대라도 개인사용 목적이 아니므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4. 향후 국내 판매를 위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방송통신기자재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요건에 해당되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 당 3대 이하로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제1호 마목



5.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까?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는 제품은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제1호 아목



6. 개인사용 목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각 1대씩 2대를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 1대씩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제1호 자목



7.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아 수입된 기자재에 대해 사후관리(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을 통하여 수입한 기자재들은, 승인 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요건면제안내-적합성평가 면제에서 이행신고(사후관리) 안내를 참조하여 면제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로 이행신고서를 제출(이행신고) 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 ① 이행신고서 : 필수 제출
- ② 증빙서류 : 이행신고서와 함께 제출
 - ㉠ 적합성평가를 완료한 경우 :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첨부
 - ㉡ 폐기한 경우 : 폐기증명서(폐기업체를 이용한 경우) 또는 폐기한 사진
 - ㉢ 반출한 경우 : 수출면장 등 해외로 반출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8.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수입/판매하려고 하는데 통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수입자의 보관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전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통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관 전에 국립전파연구원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시험 시료를 제출하여 사전통관 시험접수를 하면 시험접수 번호가 발급되며 관세청 유니패스(<http://portal.customs.go.kr>)에서 방송통신기자재 사전통관 신청서 작성 후 승인 처리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관 후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1-10호) 제28조

Q A 9. 적합성평가를 받은 수입 방송통신기자재의 통관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통관하려면 관세청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확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확인 신청"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며, 인증/등록번호와 모델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승인 처리됩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1-10호) 제28조

Q A 10. 타 인증을 통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나요?

- ①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거쳐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전파시험인증센터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확인서"를 발부받아 통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건신청번호 및 요건승인번호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 ②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거쳐 산업표준화법(KS인증) 등 타 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습니다.

【관련 규정】 전파법 제58조의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021-10호) 부칙

부록2

적합성평가 대상 및 비대상 기자재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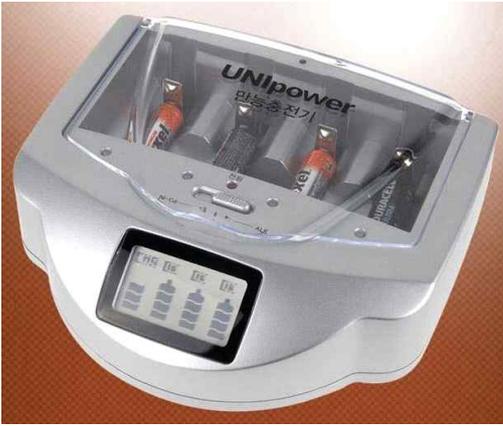
1. 조명기기류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적합성평가 대상 (수입 시 전파법 요건 대상)	적합성평가 비대상 (수입 시 전파법 요건 비대상)
<p>1. LED 스탠드</p>  <p>【근거】「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11호</p>	<p>1. 취침등, 무드등, LED 거울</p>  <p>【근거】「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11호- 비고 4</p>
<p>2. 안정기 또는 전원공급장치 등의 전자회로를 포함한 전구, LED모듈</p> <p>안정기 내장형 LED램프</p>  <p>【근거】「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11호</p>	<p>2. 휴대용 LED 랜턴</p>  <p>【근거】「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11호-비고 4</p>
<p>3. 안정기 또는 전원공급장치</p>  <p>【근거】「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11호</p>	<p>3. 안정기 또는 전원공급장치 등의 전자회로를 포함하지 않은 전구, LED모듈 등</p> <p>【근거】부품으로 취급하여 적합성평가 대상 아님</p> <p>4. 완제품이 되기 위하여 전문적인 제조공정이 추가로 필요한 조명기기 반제품</p> <p>【근거】부품으로 취급하여 적합성평가 대상 아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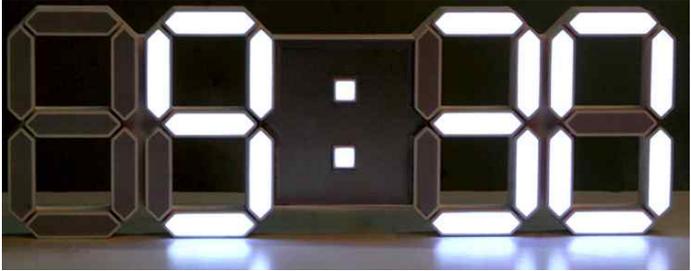
2. 리모콘류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적합성평가 대상 (수입 시 전파법 요건 대상)	적합성평가 비대상 (수입 시 전파법 요건 비대상)
<p>1. (무선전파 사용)무선 프리젠테이션 리모콘</p>  <p>【근거】「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5호</p>	<p>1. 적외선 방식의 리모콘(TV, 에어컨 등)</p>  <p>【근거】「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11호-비고 3</p> <p>※ "적외선 방식"은 흔히 "IR 방식"이라고도 불림.</p>
<p>2. (무선전파 사용)드론, RC카 리모콘</p>  <p>【근거】「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5호</p> <p>※ 리모콘의 신호를 수신만 하는 드론, RC카 또한 적합성평가 대상에 속함.</p> <p>※ 무선전파를 사용하는 기자재들은 보통 포장 등에 "○○GHz, ○○MHz"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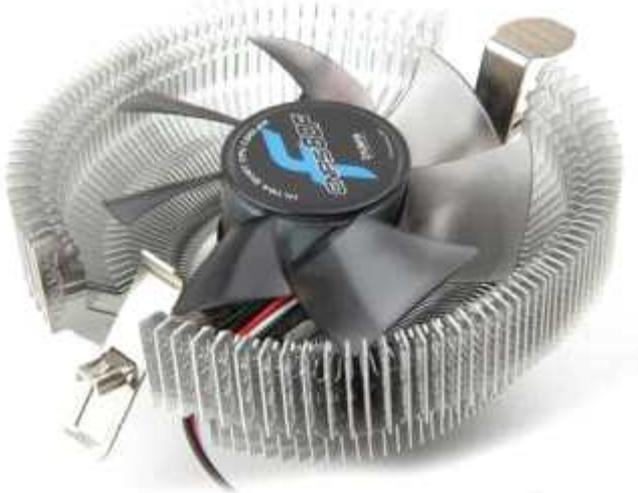
3. 배터리, 충전기 등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적합성평가 대상 (수입 시 전파법 요건 대상)	적합성평가 비대상 (수입 시 전파법 요건 비대상)
<p>1. 휴대폰 충전기(220V 사용)</p>  <p>【근거】「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11호</p>	<p>1. 배터리, 건전지, 충전지</p>  <p>【근거】「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11호-비고 3</p>
<p>2. 배터리 충전기(220V 사용)</p>  <p>【근거】「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11호</p>	<p>2. 보조배터리 (태양광 충전 보조배터리 포함)</p>  <p>【근거】「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1]-11호-비고 3</p>
<p>3. 무선충전기</p>  <p>【근거】「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5호</p>	<p>3. 1:1 충전/데이터 케이블, 라이트닝 케이블 등</p>  <p>【근거】「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11호-비고 7</p>

4. 시계류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적합성평가 대상 (수입 시 전파법 요건 대상)	적합성평가 비대상 (수입 시 전파법 요건 비대상)
<p>1. 220V를 사용하는 디지털 벽걸이 시계</p>  <p>【근거】「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11호</p>	<p>1. USB/배터리 전원을 이용하는 탁상시계</p>  <p>【근거】「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11호-비고 4</p>
<p>2. 블루투스, 와이파이 시계(전원 유형 불문)</p>  <p>【근거】「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5호</p>	<p>2. 날씨, 온/습도, 날짜 등 표시 전자시계</p>  <p>무소음 LED 탁상/알람시계</p> <p>(블루투스, 와이파이 기능 없이 USB/배터리 전원인 것에 한함)</p> <p>【근거】「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11호-비고 4</p>

5. 선풍기류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적합성평가 대상 (수입 시 전파법 요건 대상)	적합성평가 비대상 (수입 시 전파법 요건 비대상)
<p>1. 220V 전원 선풍기, 써큘레이터, 환풍기 등</p>  <p>【근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11호</p>	<p>1. CPU 쿨링팬</p>  <p>【근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11호-다목 27) 단서규정</p>
<p>2. USB, 배터리 전원 선풍기</p>  <p>【근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11호</p>	<p>2. 타 완제품에 장착되기 위한 부품용 Fan</p> <p>【근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11호-다목 27) 단서규정</p>

※ 전동기(모터)를 장착한 완제품은 대부분 적합성평가 대상

6. 측정기류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적합성평가 대상 (수입 시 전파법 요건 대상)	적합성평가 비대상 (수입 시 전파법 요건 비대상)
<p>1. 220V 전원을 사용하는 계측기류 기자재</p>  <p>【근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11호</p>	<p>1. USB/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디지털 측정기</p> <p>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멀티미터 등 또는 이와 같은 기능이 조합된 기자재들 중 USB/배터리 전원을 사용하고, 컴퓨터 또는 타 기기와 연결되지 않는 기자재</p> <p>【근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11호-비고 4</p>
<p>2. 컴퓨터 등에 연결되는 계측기 (전원 불문)</p>  <p>【근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별표 1]-11호</p>	<p>2 타 완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센서류</p> <p>【근거】 부품으로 취급하여 적합성평가 대상 아님</p>

※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의 기능을 탑재하면 적합성평가 대상임.

**“깨끗한 전파환경,
전파시험인증센터가 열어갑니다”**

감사합니다.